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 항목 적용에 있어 유류비와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 제8조 제1항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제4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차량은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하며, 당해 현장내에서 순찰을 할 경우에 사용되는 차량 유류비 및 오일교환 등 소모품 교환비 등에 한하여 가능하고, 렌트비용, 각종 보험금, 수리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안전웬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당 현장은 기존 도로를 일부 차선을 통행 제한하고 관를 매설하는 공사로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원, 안전웬스, 교통표지판 등이 필요

한 실정인 바

- 공사 특성상 투입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교통정리원, 안전웬스, 교통표지판 등은 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것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참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굴착공사에서 굴착깊이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깊이가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에서 굴착깊이라 함은 지표에서 지표이하로 굴착을 의미하는지, 지표에서 지상으로 토공작업 중 경사면 절취작업이 포함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제6호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굴착깊이 10.5미터는 지표에서 지표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토작업장의 절취해야 할 대상높이를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 굴착깊이라고 볼 수 없음.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이중검사 배제대상 여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이중검사 배제조항의 적용여부



원자력법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검사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일지라도 원자로 내에서 원료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 이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검사 배제조항의 적용이 곤란함.

공사계약일시와 설계시 확정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예상시점은



당초 계약 당시는 종전 고시 제91-57호 적용을 받았으나 당해공사가 개산공사로서 설계시 확정이 95년 이후로 예상되는 바

- 고시 제94-45호에 의한 안전관리비율의 적용시점을 당초 계약일 기준으로 제91-57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 공사금액이 결정되는 설계서 확정시점을 기준

으로 고시 제94-45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으로 보건데 장기계속공사로서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인 '94. 10. 21일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금액이 조정되는 공사로서 종전 고시 제91-57호를 적용하고 공사금액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고시 제94-45호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보건관리자 자격증 약학과 졸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당사는 의약품 제조업으로 약사면허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약학대학에서도 환경과 보건위생에 관한 교과목이 있으므로 약사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제5호에서 정한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과 작업환경의



개선 등에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보건학과, 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보건학과 등이 포함되었고 약학과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시행령 별표6 제5호의 환경위생관련학과를 산업위생관련학과로 문구조정함('97. 5. 17)
- 교육법은 고등교육법으로 개정되었음.

아파트경비 등 관리사업장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



당 사업소는 64명의 인원(사무직 4명, 경비직 50명, 기능직 10명)으로서 아파트 경비 등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동법 제17조에 의한 산업보건지도 선임하여야 되는지 여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업(아파트관리사무소도 해당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상일 때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야 함. 다만, 산업보건의는 자율로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별표 1』 제4호의 각목

-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품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 라.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책임의 주체가 하수급인이 되고 원도급자는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재해발생시 사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주체는 하수급인의 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재해발생 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중 “제조업의 출장작업” 범주에 속하는 (예 : 승강기설치 하도급공사, 보일러설치 하도급 공사 등) 제조업체 소속의 출장 근로자 업무상해의 경우 재해율계산에 있어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율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일괄적용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제조업의 출장작업” 도중 발생된 제조업 출장근로자의 재해건수는 그 건설(원수급)업체에 포함하여 산정됨.



(1) 특수건강진단 결과 “C” 급 판정 자란 건강관리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 자로서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자라는 뜻이므로 상병 상태, 추후관찰 등을 통하여 의사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양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으면 사업주는 확인(날인)을 해주어야 할 것임.

(2)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부합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게 되는 것임.

목분진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의무 유무

“C” 판정자에 대한 직업병 인정여부



(1) 특수검진결과 “C” 급으로 판정이 나와도 직업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회사에서 “C” 판정자들에게 치료를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신청을 요구할 때 직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여부(“C” 판정자에 대한 회사의 조치방안 포함)



목분진인 경우에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